

■ 건강

### 새끼발가락 휘면 무릎·허리도 위험

발가락은 걷는 동안 체중을 견디고 방향 전환을 하는 등 걷기에 특화된 중요한 관절이다. 이런 발가락 중 새끼발가락 뼈가 휘거나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겼다면 소견막류라고 불리는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코네티컷킴’에 따르면 소견막류는 새끼발가락이 신발과 바로 마찰되면서 제5 중족골 두의 바깥쪽 뼈가 돌출되는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런 작은 변형과 증상을 방치하면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못해 발목과 무릎은 물론 골반과 허리까지 치명적인 무리를 주는 만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엄지발가락 뼈가 돌출되는 무지의 반증과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선천적으로 새끼발가락 모양이 휘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인 변형에 따라 발병한다.

주로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 볼이 좁거나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하지만 딱딱한 구두를 신는 남성들한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굽 높은 신발을 신지 않더라도 유난히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빨갛게 변하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 부분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겼다면 소견막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소견막류는 치료가 늦어지면 돌출된 뼈 부위가 반복적인 자극을 받아 윤활 낭에 염증이 생기거나 피부 궤양이 생길 수 있다. 소견막류의 치료는 환자의 주관적 불편함 정도와 이학적 소견을 통해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소견막류는 X레이를 통해 변형된 뼈의 각도를 측정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소견막류 치료는 무지의반증과 마찬가지로 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착용하므로 마찰로 인한 통증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종족 골 패드나 깔창 착용만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돌출된 뼈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절골술로 변형된 뼈를 교정해 주는 치료다. 수술 시간도 짧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 것이 장점이다.



새끼발가락이라 관심이 덜 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통증과 발의 변형과 함께 보행 시 하지 전체 근육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귀가 후에는 족욕과 스트레칭 등을 해주는 것도 발가락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

■ 법률 칼럼

### 결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 결혼 2년 후에 다시 심사를 받는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게 됩니다.

이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 후 2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결혼 2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부부가 함께 공동 청원자로 이 조건을 해제하는 신청을 해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년이라는 조건부 기간 동안 의도치 않게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배우자 분들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 영구 영주권 신청에 대해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며, 저희 오피스에 문의를 주십니다.

또는, 이 조건부 영주권이라는 제약조건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만 참자...하며 무작정 참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이라는 조건부 기간 내에 이혼을 했더라도 결혼 자체가 진실된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혼자서도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실 때 부부 공동 접수에 대한 면제(waiver)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혼으로 인해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혼 판결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혼자서 조건부 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혼자 영구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상황을 이민법과 규정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절차가 아니므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부터 이혼의 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결혼생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진실된 진술서(Statement)를 통해 이민국의 심사와 고려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결혼한 시점부터 이혼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부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진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예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텍스 리턴, 공동 은행 계좌, 공동 명의의 각종 재산 관련 서류, 상대 배우자가 수혜자로 기재되어 있는 생명 보험이나 은퇴 구좌, 그리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와 있는 아이의 출생증명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받은 조건 영주권은 2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생활이 끝나게 된 이혼 시점까지의 제반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본인이 영주권만을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진실된 의도로 사실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했음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함영심 변호사**  
 Sky Law Firm, P.C.  
 www.skyuslaw.com  
 young@skyuslaw.com  
 TEL (714) 522-1033  
 6 Centerpointe Dr. #700  
 La Palma, CA 90623



www.isemusa.com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연체세금 해결

- 법인설립
- 세무감사대행

- 해외자산보고
- 상속, 증여세금보고

**방문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